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가단1090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5.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양수금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은 2016. 7. 1. C에게 10,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27.9%, 연체이율 연 27.9%, 대출만기일 2019. 7. 1.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후 C이 위 대출금을 연체하자 D는 2017. 6. 23.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7. 7. 7.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020. 10. 13. 기준 위 대출채권의 잔액은 20,295,083원(= 원금 9,961,910원 + 이자 10,333,173원)이다.

2)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6. 7. 1. C에게 10,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27.9%, 연체이율 연 27.9%, 대출만기일 2021. 7. 1.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후 C이 위 대출금을 연체하자 E는 2017. 5. 23.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7. 6. 5.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020. 10. 13. 기준 위 대출채권의 잔액은 20,166,299원(= 원금 10,000,000원 + 이자 10,166,299원)이다.

나. 상속 및 등기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2. 7. 5.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C과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상속지분 각 1/2).

2) C과 피고는 2019. 5. 8.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9. 5. 16. 접수 제127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부동산 권리관계의 변동

- 1)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19. 5. 29.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조합에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2)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5. 29. 기준 시가는 100,000,000원이다.
-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5,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H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는데(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1. 12. 3. 접수 제25282호),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2,000,000원이었다. 위 등기는 2017. 4. 24.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C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고, 위 가.항 기재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G조합, H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D와 E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한 대출에 따라 C에 대하여 각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결국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제3자인 G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함이 상당하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책임재산) 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로 추인되는 50,000,000원(= 100,000,000원 × 1/2)에서 H조합의 피담보채무액의 1/2에 해당하는 16,000,000원(= 32,000,000원 × 1/2)을 공제¹⁾ 한 34,000,000원(= 50,000,000원 - 16,000,000원)인데, 이는 원고가 구하는 2020. 10. 13.까지의 피보전채권액의 합계 40,461,382원(= 20,295,083원 + 20,166,299원)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분할협약의 3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C에게 이 사건 지분의 시가에 해당하는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대출이자도 부담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분할협약에 대하여 사해의사가 전혀 없었고, C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의 원상회복 범위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G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5. 29. 기준 시가가 1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써,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진호

별지

1) H조합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인 2017. 4. 24. 말소되었으나, 원고 스스로 해당 피담보채무를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다.